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0일, 최은석의원 등 3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최은석의원)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 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한정된 인센티브만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

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